

1991年度 電波管理法 主要改正方向

徐 輔 賢

(通信開發研究院 電波放送政策研究室)

■ 차 례 ■

- | | |
|----------------|----------|
| ① 序 說 | 다. 電波振興 |
| ② 改正基本 方向 | 라. 電波使用料 |
| ③ 主要改正 內容 | 마. 其 他 |
| 가. 無線局 許可制度 | ④ 結 語 |
| 나. 電波利用技術의 標準化 | |

① 序 說

오늘날 세계각국은 고도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통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통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통신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정책상 전파이용의 촉진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선호출기, 차량 전화 등 이동무선통신의 국내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개정된 電氣通信基本法과 電氣通信事業法의 새로운 통신사업체제 하에서 통신시장의 개방에 실효성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利用制度의 改善과 아울러 電波産業의 振興體制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 11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電波管理法 改正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하여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電波管理法중 改正法律案의 基本方向 및 主要內容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② 改正基本方向

電波管理法의 改正目的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무선국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현재 부족한 전파관리경비에 충당하는 한편, 전파자원과 이용기술을 개발하여 전파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으며 법률안의 개정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電波利用促進을 들 수 있다. 무선국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설치공사가 간편한 무선설비에 대하여 技術基準確證明制度를 도입하고,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電波利用技術標準化를 도모하며, 일시적 운용목적의 무선설비등에 대한 他人貸與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선설비의 효율적이용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電波管理法 개정내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電波振興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진입하고 있는 고도통신시대의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기 위해서 기존의 단순한 전파 자원의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전파산업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電波資源開發, 電波技術開發, 人力養成 등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電波振興委員會를 설치운영하고, 동위원회내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實務協議會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명칭 「電波管理法」을 좀더 포괄적인 범주의 「電波法」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전파진흥계획 및 운영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실효성있는 결과를 낳도록 하기 위하여 전파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고, 새로운 전파기기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구하며, 각종 전파진흥재원에 조달하기 위하여 電波使用料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전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資格制度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무선종사자 자격종목 및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급증하는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주파수지정변경에 따른 損失補償, 무선국허가업무의 委任 및 전자과장해검정, 아마추어업무 등의 委任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主要改正內容

이미 既述하였듯이 새로이 개정되는 電波管理法의 명칭은 「電波法」으로 변경되며, 이 전파법의 목적은 “전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改正案 第1條) 改正案 第1條에서 “管理와 利用”을 “利用과 管理”로 용어의 순서를 바꾼 것은 비록 용어어순의 변경 그 자체로 인한 실질적인 구속력의 차이는 없으나 기존의 전파자원관리위주의 電波規制政策에서 利用者爲主體制로 전환함을 가시적으로 보이려는 정책

적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무선통신의 발전”이라는 추상적인 정책목적을 “전파이용과 전파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진흥을 도모”하려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대체하여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듯이 새로운 改正案의 주요 핵심내용은 電波振興에 두어지고 있다.

가. 無線局 許可制度

현행 電波管理法에 의하면, 무선국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시설자의 신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法 第4條, 第6條, 施行令 第22條, 施行規則 第2條) 다만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하거나 수신전용의 무선국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무선국은 임의로 또는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法 第4條 第1項) 체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법령상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부합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법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무선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法 第11條) 허가유효기간에 있어서 선박안전법, 선박법 또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義務船舶局과 義務航空機局의 허가유효기간은 無期限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 무선국의 許可有效期間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며 再許可가 가능하다. (法 第12條)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시설하는 무선국과 간이무선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허가 및 일반무선국의 재허가는 法 第6條내지 第11條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의 簡易한 許可節次에 의할 수 있다.

새로운 改正案에서는 무선국 개설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무선국 허가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法 第14條의 簡易한 許可節次的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체제에 의하면 簡易한 許可節次的의 대상범위로서 소형선박국, 간이무선국에 국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휴대용전화 및 차량전화 등과 같이 설비공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간편한 무선설비에 대하여도 법의 규정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이 技術基準確證證明을 받은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簡易한 許可節次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 경우 無線機器形式檢定規則 第2條 第18號에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형식검정의 대상기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규칙에 의한 형식검정의 합격기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電波利用技術의 標準化

현행 電波管理法 第29條에 의하면 방송수신전용설비를 제외한 모든 「無線設備」은 電波管理法 第3章 (無線設備)의 규정과 無線設備規則 (1990. 8. 8. 개정, 체신부령 제824호)에서 규정하는 技術基準에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무선설비라 함은 “무선전신, 무선전화기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法 第2條) 無線設備規則은 總則에서 전파의 질, 보호장치, 특수장치, 계기 및 예비품의 비치, 통신설비의 일반조건 및 무선설비의 공동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無線設備에 대해서는 송신설비, 방송국의 무선설비, 선박국, 해안국 및 기타 해상업무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항공이동업무, 항공 무선항해업무의 무선국과 항공기에서 탑재 사용하는 휴대국의 무선설비, 무선방위측정기, 비상국의 무선설비, 국제통신 무선국의 무선설비,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구내 무선국의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의 무선설비 등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또한 無線機器形式檢定規則(1990.9.11 改正, 체신부령 제826호) 第2條에서 정한 형식검정의 대상기에 해당하는 「無線設備의 機器」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적, 수출용제작, 외국에서 도입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기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아야 한다. (法 第29條의 2 第1項, 第2項)

새로운 改正案에는 이상과 같은 無線設備規

則, 無線機器檢定規則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합격기준, 최소한 통과기준 뿐만 아니라,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기술을 標準化하여 이를 제작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工業標準化法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금년도에 개정된 電氣通信基本法 第29條에서 단서조항으로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격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파기술과 관련되는 標準化의 문제는 電氣通信基本法 第8條 第2項 第4號의 電氣通信技術의 標準化에 관한 사항이 전기통신기술진흥을 위한 施行計劃에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제29조에서 체신부장관에게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電波振興

改正案에서는 電波振興에 관한 사항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電氣通信基本法 第2章 (電氣通信技術의 振興)과 연계해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電氣通信基本法에 의하면 “電氣通信의 원활한 發電과 情報社會의 促進을 위하여 電氣通信基本計劃을 樹立”하고 이 基本計劃에는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에 관한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電氣通信基本法 第5條) 電氣通信基本法 第8條에서는 계속하여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이에 관한 施行計劃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氣通信技術의 振興, 開發에 관한 사항
2. 電氣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需給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電氣通信技術 및 電氣通信方法의 採擇에 관한 사항

4. 電氣通信技術의 標準化에 관한 사항

5. 電氣通信技術을 研究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育成에 관한 사항

6. 電氣通信技術의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7. 기타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에 관한 사항

따라서 電波振興에 관한 상기사항에 대한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수립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改正案에는 전파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의 직속하에 電波振興委員會를 두고,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파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 육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파수대의 이용대역을 事前公告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의하여 중점개발하고자 하는 전파기술의 대상을 사전에 정하여 公告함으로써 전파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라. 電波使用料

限定된 電波資源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고 電波技術의 振興을 위해서는 막대한 財源이 소요되며 이러한 財源으로는 이미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치 논의되었듯이 電波使用料를 필요로 한다. 電波使用料의 性格은 전파행정서비스에 대한 反對給付, 電波資源의 排他的使用에 따른 反對給付, 기술개발 등 所要費用의 受益者 負擔으로 볼 수 있으며, 電波使用料로 마련된 財源은 전파감시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監視施設의 擴充, 周波數의 合理的管理, 電波技術開發, 電波關聯産業振興 및 人力養成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선진국가에서 電波資源利用의 對價, 電波資源을 통한 收益의 大家로서의 電波使用料制度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競賣制度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마. 其 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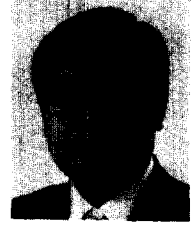
그 밖에 改正案에서는 현행 電波管理法 第31條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장래 도입예정인 전세계적인 해상조난안전제도) 같은 미래의 새로운 자격종목의 출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電波管理法 第64條에서는 주파수 지정변경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으나, 이미 지정된 주파수를 변경한 후 그 주파수를 다른 무선국 시설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주파수를 지정받은 자나 주파수지정변경을 초래한 자에 대해서는 損失補償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전파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무선국허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委任機關을 체신청장 등에서 우체국과 같은 所屬機關으로 변경하고, 委託機關을 “事業團”에서 “電波關聯法人”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파장해검정, 아마추어무선업무 등 관련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4] 結 語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파관리법의 주요개정방향은 ① 損失補償制度의 補完, 下部行政機關에 대한 委任의 擴大, 全破關聯機關에 대한 委託範圍의 擴大와 같이 기존의 電波管理制度를 補完하는 側面, ②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の 改正, 電氣通信事業者構造의 變更에 따른 基本計劃樹立, 標準化, 人力養成, 育成支援의 擴大, 이에 소요되는 財源으로서 電波使用料의 賦課 등 電波振興의 側面, ③ 휴대용 전화, 차량전화의 이용급증에 따른 전파이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無線局許可制度의 改善, 簡易한 許可節次 適用對象範圍이 擴大 등 利用制度, 資格制度의 改善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改正方向 그 자체는 기존 관리체제에 비하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이나 이러한 기본방향의 전향적 설정이 時宜性있는 有效한 可的의 結果를 얻기 위해서는 關聯 電氣通信法律과의 關係, 下部 施行令

과의 關係, 施行令相互間의 關係, 施行規則사이의 關係에 있어서 用語의 定義, 適用範圍, 要件 및 效果, 중첩되는 各種 基準 사이의 優先順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관계부처간의 충실한 협의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徐 輔 賢

저자약력

《學 歷》

- 1984년 9월~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법학박사)
- 1988년 12월~1989년 12월 : 캐나다 McGill대 법과대학원 항공우주법연구소 연수
- 1982년 9월~1984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학석사)
- 1977년 3월~1981년 2월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經 歷》

- 1989년 1월~현재 : 통신개발연구원 전파방송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1991년 8월 3일~8월 10일 : INMARSAT, APT, ABU주최 WARC~92세미나 대표단참석(태국, 방콕)
- 1991년 5월 26일~6월 9일 : ITU 제46차 관리이사회 대한민국대표단 참석(스위스, 제네바)
- 1990년 6월 9일~ 6월 24일 : ITU 제45차 관리이사회 대한민국대표단 참석(제네바)
- 1991년 1월~현재 : 체신부 WARC~92 준비반 위원
- 1990년 10월~12월 : 체신부 전파진흥중장기계획 위성통신분과위원
- 1988년 12월~1989년 12월 : 캐나다 맥길(McGill)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 객원연구원(항공우주법, 국제통신법 연구)
- 1985년 4월~1988년 12월 : 통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